

(우)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60 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김기성(6574) 보험급여팀장 고영옥(6572) / 팀원 이승아(6560) / E-mail: 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7360호

시행일자 2024. 9. 30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
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 기한 재안내

1. 관련근거 :

- 질병관리청, 진단관리총괄과-322(2024. 7. 19.) ※ 기 안내 사항
- 대의협 제813-4960호(2024. 7. 26.) ※ 기 안내 사항
- 질병관리청, 진단관리총괄과-661(2024. 9. 27.)

2. 위 호로 기 안내한 '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 기한 안내' 사항과 관련하여, 질병관리청에서 검사비 청구 마감 기한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하여 이를 전달하오니, 귀 회 소속 회원이 반드시 기한 내 청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청구기간 : ~2024. 10. 31.(목) 18:00시 까지(변동사항 없음) *심평원 접수일 기준

나. 청구방법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80호(2023.12.27.)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에 따라 청구

※ 해당기간 내 청구(원 청구, 보완 청구, 추가 청구) 완료해야 하며, 청구기간 종료 후 청구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국비 지급이 불가함

#붙임 : 보건복지부 공문.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